

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 
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62호
- 나. 제 출 자 : 운영희 의원, 장규권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. 23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자율소방대 지원(안 제4조)
- 라. 자율소방대 평가(안 제5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바. 표창(안 제7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동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 - 안 제2조에서는 ‘전통시장’, ‘상점가’, ‘자율소방대“ 등의 정의에 대하여,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전통시장 등의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 - 안 제4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절차,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,
  - 안 제5조에서는 자율소방대 평가에 대하여,
  -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,
  - 안 제7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우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는 8곳이 금천소방서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원수는 총 116명임(붙임 2 참조).

-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에서 2024.12.30 조례를 제정 하였음
- 시장 상인의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자율소방대 활동 및 화재 안전관리에 다소 소극적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,
- 자율소방대 및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상인들의 낮은 관심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,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제정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 1부. 끝.

#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[시행 2024. 9. 20.] [법률 제20455호, 2024. 9. 20., 일부개정]

**제65조(상인회)**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>

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, 2018. 6. 12., 2024. 2. 20.>

1.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
2.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
3.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
4.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
5.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(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6.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7.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

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

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8., 2021. 4. 20.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
2.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
3.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
4.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,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
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8.>

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9. 1. 8.>

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9. 1. 8.>

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 1. 8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(2025. 1월 현재)

연번	시 장 명	형 태	자율소방대 등록여부	대 원 수	비 고
1	별빛남문시장	전통시장(인정)	0	11명	
2	비단길현대시장	전통시장 (등록+인정)	0	18명	
3	대명여울빛거리	전통시장(+상점가) (등록)	0	11명	
4	은행나무시장	전통시장 (등록+인정)	0	33명	
5	독산동우시장	상점가(등록)	0	18명	
6	맛나는거리 상점가	골목형상점가(등록)	0	5명	
7	정훈 한마음 골목시장	골목형상점가(등록)	0	10명	
8	천리단길	골목형상점가(등록)	0	10명	
9	아름다운 별장거리	골목형상점가(등록)	X	-	2024. 9. 등록
10	법원단지길	골목형상점가(등록)	X	-	2024. 9. 등록